

200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의 목적

- 제18회 정례회 기간중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처 전반에 걸쳐 업무실행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여
 - 의회사무처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의원보좌능력 향상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6조

2. 감사기간 : 2000. 6. 27(화) 10:00

3. 감사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없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분	소속정당	위원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민주당	이용부	전문위원 이 청 수 · 5급 전 재 섭 · 6급 송 명 호 · 6급 윤 재 근 · 7급 양 형 남
간사	민주당 한나라당	이성호 조상훈	
위원	민주당	김노진 김명수	
"	"	김성규	안내직원
"	"	송미화	· 기능9 김갑연
"	"	송태경	· 기능10 김경량
"	"	이강욱	속기사 (2명)
"	"	정현관	녹취요원(2명)
"	"	주세만	
"	"	최충민	
"	"	최영수	
"	"	허광태	
"	한나라당	길기연	
"	"	임동규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시	감사대상기관	장소	비고
2000. 6. 27 (화) 10:00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운영위원회 회의실	

6.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시책질의 ○ 기타사항	○ 새천년 원년의 선진 의회 행정 구현을 위한 계획 ○ '99,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 '99, 2000년도 예산 집행 현황 ○ 청원 및 민원서류 접수, 회부 및 처리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 '99, 2000년도 국제교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의회보」 등 홍보물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 ○ 의원,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의정활동 및 시정과 관련 필요한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 가. 의회사무처 기능 활성화 관련 계획 및 추진실적
 - 나. 의원보좌활동 수범사례
 - 다. 1999, 2000년도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
 - 라. 1999,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황
 - 마.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 각 감사위원은 서류(자료) 제출요구목록을 2000. 5. 25.까지 운영위원장에게 사전 제출

8. 감사 요령

- 가. 감사방법
- (1) 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또는 문

<p>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p> <p>나. 감사자료 제출요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2)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첨서식(서류제출 요구목록)에 기재한 후 운영위원장에게 2000. 5. 25까지 제출 (3) 위원장은 요구자료목록을 수합한 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 (4)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 50부를 2000년 6월 10일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 <p>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및 공보실장, 담당관 (2명)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2)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적용 · 증인출석요구실비보상 (조례 제8조) · 과태료 부과 (조례 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조례 제10조, 11조) <p>라. 감사진행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의회사무처 간부 선서 (4) 의회사무처장 인사 및 간부 소개 (5) 업무현황보고 청취 (6)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p>마.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 소관사무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재판에 계류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동법시행령 제17조의7)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 	<p>여 참여할 수 없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감사상의 주의의무(동법시행령 제17조의8)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 (5) 감사공개 원칙 (동법시행령 제17조의9)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3일 전에 통보(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p>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p> <p>가. 방 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p>나. 작성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3)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4)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 후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 송부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종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최종결과 보고서 채택 (5) 본회의 의결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u>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u> <u>행정사무감사계획서</u></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2px;">의안 번호</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center;">600</td> <td style="padding: 2px;">제안년월일 : 2000년 5월 3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td> </tr> </table> <p>1. 감사목적</p> <p><input type="checkbox"/> 제18회 정례회(2000년 제1차) 기간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새천년 새서울 가꾸기 등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업무실</p>	의안 번호	600	제안년월일 : 2000년 5월 3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의안 번호	600	제안년월일 : 2000년 5월 3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